

의안번호	제90호
의결 연월일	2014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김봉회 의원 등 7명
발의연월일	2014년 12월 1일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봉회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0
----------	----

발의연월일 : 2014. 12. 1.

발의자 : 김봉회, 박병진, 임순묵,
강현삼, 이광진, 임현경,
임희무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안 제9조)

나. 기타 조문 정비(안 제1조부터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 바이오환경국 환경정책과와 협의

라. 입법예고 : 해당없음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9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터미널”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제2조제5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른”으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을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아니하고”를 “아니하고”로, “정지상태”를 “정지 상태”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로, “제2조의 규정

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이를 도보”를 “도보”로, “당해”를 “그”로 한다.

제4조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제1항에 따라”로, “아니 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라”로, “각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그”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당해”를 “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자료(비디오 테잎)”을 “자료(비디오 테이프)”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의 단서에 따라”로, “제4 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5항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 라 함은 <u>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u>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 3. (생략) 4. “터미널” 이라 함은 「<u>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u>」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u>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5. “차고지” 라 함은 「<u>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u>」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 	<p>제1조(목적) ----- ----- <u>제59조</u> <u>에 따라</u>----- ----- ----- -----.</p> <p>제2조(정의) ----- ----- <u>뜻은</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u>----- ----- -----. 2. · 3. (현행과 같음) 4. “터미널” 이라 함은 「<u>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u>」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u>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5. ----- 「<u>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u>」 제5조에 따른----- -----

송사업의 면허·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및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를 말한다.

6.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상·노외주차장을 말한다.

7. “주차”라 함은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자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자동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8. “정차”라 함은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9. “긴급자동차”라 함은 「도

--- 법 제29조에 따른-----

-----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 제5조에 따른-----
-----.

6. ----- 「주차장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7. -----

-----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

-----.

8. -----

----- 아니하고-----
----- 정지 상태-----
--.

9. ----- 「도로

로교통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 ① (생략)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당해 지역이 제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공회전의 제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 5. (생략)

제6조(공회전 단속공무원) ① 도지사는 환경 또는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

교통법」 제2조제22호 -----
----- 제2조에 따른-----
-----.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 ① (현행과 같음)
- ② ----- 제1항에 따라-----
-- ----- 도
보-----
---- 그-----
-----.

제4조(공회전의 제한) 제3조제1항에 따라-----

----- 아니 된다.

제5조(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4조에 따라-----

----- 각 호-----
-.

- 1. ~ 5. (현행과 같음)

제6조(공회전 단속공무원) ① ---

----- 해

무원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병역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공회전 단속 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모자, 완장, 어깨띠 등을 착용하여 누구나 쉽게 당해 공무원이 단속담당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용 시계·온도계, 비디오 등 공회전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 하여야 한다.

제7조(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담당공무원이 제한지역에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가 공회전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공회전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을 경우에는 공회전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당 -----
----- 제2조제10호에 따
른-----

② -----

제7조(공회전의 단속) ① -----

② ----- 제1항에 따라

규정에 의하여 공회전시간을 측정
한 결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
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
료(비디오 테잎 등)를 확보하여
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과
태료부과 대상자동차 표시를 당
해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다.

③ 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
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회전 시
간을 측정한 결과가 제4 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
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
차 운전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
만, 자동차 운전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경우 2인 이상의
단속공무원이 연서하여 위반사
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8조(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
도) 공회전 제한지역의 터미널
· 차고지 · 주차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지역의 이
용자에게 공회전의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

- 제4조에 따른-----

----- 자료(비디오테이프

----- 해당 -----.

③ ----- 제1항의 단서
에 따라-----

----- 제4조에 따른-----

제8조(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
도) -----

----- 해당 -----

제9조(권한의 위임) -----

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단속업무
4.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

1. 제3조에 따른-----

2. 제6조에 따른-----

3. 제7조에 따른-----

4.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5항제5호에 따른-----

관 계 법 령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①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②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09.5.21, 2012.5.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부착 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09.5.21.>

제94조(과태료) ①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7.16.>

② 제7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4.5., 2013.7.1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1.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2.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1. 제3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 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4.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6.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석탄·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7. 제44조제2항 또는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검사·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검사·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9. 제51조제5항(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과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11.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12. 제68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13. 제7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14.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2.5.23., 2013.4.5., 2013.7.16.>
1.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리방안에 따라 냉매를 적절하게 관리·회수·처리하지 아니한 자
 - 1의2.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의2.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3의3.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2.2.1.>
 5.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6.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6의2.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전문정비사업자
 7.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8.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⑥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7.1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2.1., 2013.4.5., 2013.7.16.>